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4호)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455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검토의견 .....                                          | 3 |
| 1. 보건복지부장관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임호선의원안) .....                  | 3 |
| 2. 인구 3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br>의무화(김선민의원안) ..... | 8 |



## I. 개요

### 1.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24호)

####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호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24.

(3) 회 부 일 : 2024. 7. 25.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공공산후조리원 수요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여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 2.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455호)

###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선민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8. 30.
- (3) 회 부 일 : 2024. 9. 2.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증가하면서 민간산후조리원의 과도한 경쟁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인 비용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출산가정이 많지 않음에 따라 다수의 출산가정에서 여전히 고가의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민간산후조리원조차도 충분히 개설되지 않아 출산을 앞둔 가정의 산후조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인구가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반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1항 단서 및 제2항 신설).

## II. 검토의견

### 1. 보건복지부장관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임호선의원안)

- 임호선의원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로서 현행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1항).

| 현행                                                                                                                                                   | 개정안                                                                                                                                  |
|------------------------------------------------------------------------------------------------------------------------------------------------------|--------------------------------------------------------------------------------------------------------------------------------------|
|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신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br>② (생략) | 제15조의17(공공산후조리원 설치) ① <u>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u> -----<br>----- <u>지역의 산후조리원 수요</u> -----<br>-----<br>-----<br>-----<br>--.<br>② (현행과 같음) |

- 산후조리원은 분만 직후의 임신부나 출생 직후의 신생아에게 급식·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으로서,<sup>1)</sup> 1990년대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운영·관리 등을 보다 철저히 하고자 2006년 「모자보건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였음.

1)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신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 한편, 산후조리원은 주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나 질병에 취약한 신생아의 집단감염 및 화재 등의 사고로 안전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산모와 신생아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1년 12월 개정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로 기초자치단체 외에 광역자치단체를 추가하였음.

□ 2024년 6월 말 기준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 21개소<sup>2)</sup>가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전체 산후조리원 452개소 중 4.6%에 해당함.

#### <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

(단위: 개소수, %, 만원, 명)

| 개소수 |    |     | 입실율  |      | 평균 이용요금<br>(2주, 일반실) |     | 1일 평균 입원<br>영유아수 |      |
|-----|----|-----|------|------|----------------------|-----|------------------|------|
| 총계  | 공공 | 민간  | 공공   | 민간   | 공공                   | 민간  | 공공               | 민간   |
| 452 | 21 | 431 | 66.1 | 58.8 | 175                  | 354 | 8.7              | 12.3 |

자료: 보건복지부('24.6월 기준, 휴업한 산후조리원 제외)

□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로서 현행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건복지부장관도 추가하려는 것인바,

민간 산후조리원의 공급이 부족하거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이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공공산후조리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2) p. 14. 참고자료 1,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참조

전국 어디에서도 산후조리원의 공급이 부족한 곳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찾을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이 지자체의 사무뿐 아니라 국가의 사무이기도 하다는 정책적 전환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 열악한 재정상황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전국의 공공산후조리원 중 어느 곳은 국가가, 어느 곳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지의 문제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고,

- 민간이 담당하는 영역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가와 민간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또한, 동법 시행령 별표 2의2<sup>3)</sup>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폐쇄 및 중단에 따른 사후관리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 또는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

3)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하여는 설치기준 또는 운영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감독체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다음의 입장을 밝히고 있음.

- 산후조리 지원에 있어 중앙정부는 지역 구분 없는 보편적 정책 지원 제공을 하고, 지방정부는 공공산후조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sup>4)</sup>을 시행하는 등의 역할 구분이 필요하므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주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또한, 보건복지부가 2021년 실시한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산모의 비율이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8%에 이르는 데 이 집단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sup>5)</sup>에 투입되는 예산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는바, 개정안이 제기한 이슈는 산모들 간의 형평성 이슈와도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예컨대 2024년 기준 110여 기초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해당 지역 실정에 맞게 산후조리 관련 정책 지원 중(공공산후조리원, 현금, 바우처, 지역화폐 등)

5) 보건복지부는 공공산후조리원 21개소에 대하여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평균 건립 비용을 약 44억원, 연간 운영비를 약 12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음.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관련 기관 의견 >**

| 부처명    | 개정안에 대한 의견                                                                                                                                                                                           |
|--------|------------------------------------------------------------------------------------------------------------------------------------------------------------------------------------------------------|
| 기획재정부  | <p>정부는 “첫만남이용권 제도*”를 통해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중복 소지가 있음.</p> <p>*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지원</p>                                                                  |
| 대한의사협회 | <p>관할 지역의 사정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게 하되, 국가가 재정적으로 보조하는 것이 적절함. 오히려 산모나 그 가정에 대한 출산 및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거나, 산후조리인력의 지원, 기존의 출산병원이나 인근 산후조리원으로의 이동 수단 지원 등을 통해서 산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임.</p> |

2. 인구 3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의무화(김선민의원안)

☐ 김선민의원안은 인구 30만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산  
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의 공공산  
후조리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규  
정함(안 제15조의17제1항 단서 및 제2항 신설).

[illegible]

□ 산후조리원은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신생아에게 급식·  
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으로서,<sup>6)</sup> 1990년대

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운영·관리 등을 보다 철저히 하고자 2006년 「모자보건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였음.

□ 한편, 산후조리원은 주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나 질병에 취약한 신생아의 집단감염 및 화재 등의 사고로 안전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산모와 신생아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1년 12월 개정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로 기초자치단체 외에 광역자치단체를 추가하였음.

□ 2024년 6월 말 기준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 21개소<sup>7)</sup>가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전체 산후조리원 452개소 중 4.6%에 해당함.

### <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

(단위: 개소수, %, 만원, 명)

| 개소수 |    |     | 입실율  |      | 평균 이용요금<br>(2주, 일반실) |     | 1일 평균 입원<br>영유아수 |      |
|-----|----|-----|------|------|----------------------|-----|------------------|------|
| 총계  | 공공 | 민간  | 공공   | 민간   | 공공                   | 민간  | 공공               | 민간   |
| 452 | 21 | 431 | 66.1 | 58.8 | 175                  | 354 | 8.7              | 12.3 |

자료: 보건복지부('24.6월 기준, 휴업제외)

6)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7) p. 14. 참고자료 1,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참조

□ 개정안은 인구 30만 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 등 출산인프라 확충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 선택권 확대 및 산후조리비용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인구 30만 명 미만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공공산후조리원이 기설치된 17개 시·군·구를 제외하고 147개 기초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추가로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sup>8)</sup>, 인구수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서울·부산·인천 등과 같은 대도시에도 설치되어야 하는바 이는 개정안이 의도하는 열악한 지역의 보조와 다소 상충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는 지역 내 기존의 산후조리원 운영 현황 및 수요·공급 현황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비 지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바, 개정안은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이와 같은 입법 조치를 통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8) p. 15. 참고자료 2, 김선민의원안에 따를 경우 설치가 예상되는 공공산후조리원 참조

□ 다만, 개정안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되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의 간소화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운영인력의 지원을 포함하는지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도, 그 규모 및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사전에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 정책에 관하여 중앙정부는 지역별 차등이 없는 첫만남이용권<sup>9)</sup>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의 인구구조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포함하는 산후조리 정책을 조례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1년 실시한 산후조리 실태조사의 결과로서 산후조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은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뿐 아니라 그 외의 산후조리 경비지원, 배우자 육아휴직 활성화, 산모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다양한 범주로 파악하고 있음.

9) 출생 아동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바우처 제공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정책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2023. 12. 2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등) 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일시에 지급한다. <개정 2024. 3. 26.>

1. 첫째 출생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2. 둘째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 산후조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중복응답) >**

(단위: %)

| 산후조리<br>경비지원 | 배우자<br>육아휴직<br>활성화 | 산모<br>출산휴가<br>기간 확대 | 건강관리<br>지원 사업<br>확대 | 공공<br>산후조리원<br>확대 | 육아휴직<br>제도<br>활성화 | 기타<br>(정신건강관리<br>지원확대 등) |
|--------------|--------------------|---------------------|---------------------|-------------------|-------------------|--------------------------|
| 75.6         | 37.6               | 20.8                | 17.4                | 13.4              | 13.3              | 19.5                     |

\* 자료: 2021 산후조리실태조사 결과 보고 재구성

\* 중복응답(2가지)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관련 기관 의견 >**

| 부처명       | 개정안에 대한 의견                                                                                                                                                                                                               |
|-----------|--------------------------------------------------------------------------------------------------------------------------------------------------------------------------------------------------------------------------|
| 기획재정부     | ○정부는 “첫만남이용권 제도*”를 통해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중복 소지가 있음.<br>*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지원                                                                                                |
| 한국산후조리원협회 |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에게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초래될 것이며,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민간 산후조리원은 타격을 받게 되어 그 숫자가 줄어들어 차후에는 공공부문이 부담해야 할 영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함.<br>○산후조리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민간 산후조리원 시장이 받게될 침해적 요소를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
| 경기도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유지가 바람직함                                                                                                                                                                      |
| 부산광역시     | ○현행법의 유지가 더 바람직하며 첫만남이용권 제도 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등 보편적 복지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더 선호함.                                                                                                                                               |
| 강원특별자치도   |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방안보다는 현행법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더 선호함.                                                                                                                                                     |
| 울산광역시 북구  | ○인구수 기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의무화는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 및 자원 문제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함.<br>○초저출산 시대에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개정안처럼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이 되어야 할 것임.                                                                                       |

|              |
|--------------|
| 문 의 처        |
| 02)6788-5498 |

|         |               |
|---------|---------------|
| 【참고자료1】 |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
|---------|---------------|

(단위: 명, m²)

| 지역      | 산후조리원명              | 개소일      | 임산부실 | 영유아실 | 면적    |
|---------|---------------------|----------|------|------|-------|
| 서울 송파구  |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br>산후조리원 | 2014.2.  | 27   | 31   | 1,298 |
| 서울 서대문구 | 공공산후조리원<br>품애(愛)가득  | 2023.12. | 12   | 12   | 1,187 |
| 울산 북구   | 울산 북구<br>공공산후조리원    | 2021.7.  | 28   | 28   | 2,883 |
| 경기 여주시  | 경기 여주<br>공공산후조리원    | 2019.5.  | 13   | 13   | 1,498 |
| 경기 포천시  | 경기 포천<br>공공산후조리원    | 2023.5.  | 20   | 20   | 2,437 |
| 강원 삼척시  | 삼척의료원<br>공공산후조리원    | 2016.2.  | 13   | 15   | 765   |
| 강원 철원군  | 철원군<br>공공산후조리원      | 2020.2.  | 10   | 10   | 1,341 |
| 강원 양구군  | 양구군<br>공공산후조리원      | 2020.6.  | 8    | 8    | 825   |
| 강원 화천군  | 화천군<br>공공산후조리원      | 2022.2.  | 5    | 5    | 603   |
| 강원 양양군  | 양양군<br>공공산후조리원      | 2024.5   | 7    | 7    | 1,638 |
| 충남 홍성군  | 충남홍성<br>공공산후조리원     | 2022.2.  | 8    | 9    | 580   |
| 전남 해남군  | 전남1호<br>공공산후조리원     | 2015.9.  | 10   | 10   | 494   |
| 전남 강진군  | 전남2호<br>공공산후조리원     | 2018.5.  | 10   | 10   | 616   |
| 전남 완도군  | 전남3호<br>공공산후조리원     | 2019.6.  | 10   | 10   | 730   |
| 전남 나주시  | 전남4호<br>공공산후조리원     | 2020.12. | 16   | 18   | 797   |
| 전남 순천시  | 전남5호<br>공공산후조리원     | 2022.3.  | 5    | 5    | 113   |
| 경북 울진군  | 울진군<br>공공산후조리원      | 2020.9.  | 8    | 10   | 707   |
| 경북 김천시  | 김천시<br>공공산후조리원      | 2022.10. | 12   | 14   | 1,432 |
| 경북 상주시  | 상주시<br>공공산후조리원      | 2023.12. | 13   | 10   | 1,998 |
| 경남 밀양시  |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 2022.6.  | 8    | 8    | 524   |
| 제주 서귀포시 | 서귀포<br>공공산후조리원      | 2013.3.  | 11   | 15   | 548   |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자료2】**

**김선민의원안에 따른 경우 설치가 예상되는 공공산후조리원**

(인구수: '24. 6. 기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24. 5. 기준)

| 연번 | 자치단체명     | 인구수     | 비고  | 연번 | 자치단체명     | 인구수     | 비고  |
|----|-----------|---------|-----|----|-----------|---------|-----|
| 1  | 서울특별시 종로구 | 139,189 |     | 40 | 울산광역시 울주군 | 218,935 |     |
| 2  | 서울특별시 중구  | 121,475 |     | 41 | 경기도 광명시   | 278,458 |     |
| 3  |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6,061 |     | 42 | 경기도 동두천시  | 87,499  |     |
| 4  | 서울특별시 성동구 | 276,597 |     | 43 | 경기도 과천시   | 84,921  |     |
| 5  | 서울특별시 강북구 | 285,054 |     | 44 | 경기도 구리시   | 186,280 |     |
| 6  | 서울특별시 금천구 | 226,672 |     | 45 | 경기도 오산시   | 236,847 |     |
| 7  | 부산광역시 중구  | 38,174  |     | 46 | 경기도 군포시   | 258,991 |     |
| 8  | 부산광역시 서구  | 102,983 |     | 47 | 경기도 의왕시   | 155,593 |     |
| 9  | 부산광역시 동구  | 86,820  |     | 48 | 경기도 이천시   | 222,614 |     |
| 10 | 부산광역시 영도구 | 105,434 |     | 49 | 경기도 안성시   | 191,677 |     |
| 11 | 부산광역시 동래구 | 269,105 |     | 50 | 경기도 양주시   | 280,188 |     |
| 12 | 부산광역시 남구  | 255,816 |     | 51 | 경기도 포천시   | 142,365 | 기설치 |
| 13 | 부산광역시 북구  | 270,824 |     | 52 | 경기도 여주시   | 114,645 | 기설치 |
| 14 | 부산광역시 사하구 | 294,246 |     | 53 | 경기도 연천군   | 41,091  |     |
| 15 | 부산광역시 금정구 | 212,892 |     | 54 | 경기도 가평군   | 62,393  |     |
| 16 | 부산광역시 강서구 | 142,292 |     | 55 | 경기도 양평군   | 126,273 |     |
| 17 | 부산광역시 연제구 | 212,093 |     | 56 | 강원도 춘천시   | 286,537 |     |
| 18 | 부산광역시 수영구 | 173,167 |     | 57 | 강원도 강릉시   | 208,434 |     |
| 19 |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1,032 |     | 58 | 강원도 동해시   | 87,988  |     |
| 20 | 부산광역시 기장군 | 177,119 |     | 59 | 강원도 태백시   | 38,161  |     |
| 21 | 대구광역시 중구  | 92,659  |     | 60 | 강원도 속초시   | 81,409  |     |
| 22 | 대구광역시 서구  | 163,359 |     | 61 | 강원도 삼척시   | 62,354  | 기설치 |
| 23 | 대구광역시 남구  | 136,893 |     | 62 | 강원도 홍천군   | 67,205  |     |
| 24 | 대구광역시 달성군 | 259,280 |     | 63 | 강원도 횡성군   | 46,327  |     |
| 25 | 대구광역시 군위군 | 22,707  |     | 64 | 강원도 영월군   | 37,134  |     |
| 26 | 인천광역시 중구  | 164,129 |     | 65 | 강원도 평창군   | 40,505  |     |
| 27 | 인천광역시 동구  | 58,761  |     | 66 | 강원도 정선군   | 33,808  |     |
| 28 | 인천광역시 계양구 | 281,308 |     | 67 | 강원도 철원군   | 40,888  | 기설치 |
| 29 | 인천광역시 강화군 | 68,772  |     | 68 | 강원도 화천군   | 22,955  | 기설치 |
| 30 | 인천광역시 옹진군 | 20,174  |     | 69 | 강원도 양구군   | 20,890  | 기설치 |
| 31 | 광주광역시 동구  | 106,462 |     | 70 | 강원도 인제군   | 31,769  |     |
| 32 | 광주광역시 서구  | 281,113 |     | 71 | 강원도 고성군   | 27,169  |     |
| 33 | 광주광역시 남구  | 208,095 |     | 72 | 강원도 양양군   | 27,579  | 기설치 |
| 34 | 대전광역시 동구  | 215,936 |     | 73 | 충청북도 충주시  | 207,468 |     |
| 35 | 대전광역시 중구  | 223,304 |     | 74 | 충청북도 제천시  | 129,618 |     |
| 36 | 대전광역시 대덕구 | 170,090 |     | 75 | 충청북도 보은군  | 30,735  |     |
| 37 | 울산광역시 중구  | 207,693 |     | 76 | 충청북도 옥천군  | 48,586  |     |
| 38 | 울산광역시 동구  | 151,521 |     | 77 | 충청북도 영동군  | 43,848  |     |
| 39 | 울산광역시 북구  | 216,893 | 기설치 | 78 | 충청북도 증평군  | 37,316  |     |

| 연번  | 자치단체명    | 인구수     | 비고  | 연번  | 자치단체명    | 인구수     | 비고  |
|-----|----------|---------|-----|-----|----------|---------|-----|
| 79  | 충청북도 진천군 | 86,751  |     | 135 | 경상북도 영천시 | 100,013 |     |
| 80  | 충청북도 괴산군 | 36,165  |     | 136 | 경상북도 상주시 | 92,908  |     |
| 81  | 충청북도 음성군 | 90,245  |     | 137 | 경상북도 문경시 | 67,929  |     |
| 82  | 충청북도 단양군 | 27,566  |     | 138 | 경상북도 경산시 | 266,706 |     |
| 83  | 충청남도 당진시 | 170,375 |     | 139 | 경상북도 의성군 | 49,375  |     |
| 84  | 충청남도 공주시 | 102,045 |     | 140 | 경상북도 청송군 | 23,887  |     |
| 85  | 충청남도 보령시 | 94,655  |     | 141 | 경상북도 영양군 | 15,490  |     |
| 86  | 충청남도 서산시 | 175,657 |     | 142 | 경상북도 영덕군 | 33,518  |     |
| 87  | 충청남도 논산시 | 109,413 |     | 143 | 경상북도 청도군 | 40,984  |     |
| 88  | 충청남도 계룡시 | 46,687  |     | 144 | 경상북도 고령군 | 30,254  |     |
| 89  | 충청남도 금산군 | 49,973  |     | 145 | 경상북도 성주군 | 41,818  |     |
| 90  | 충청남도 부여군 | 60,156  |     | 146 | 경상북도 칠곡군 | 108,836 |     |
| 91  | 충청남도 서천군 | 48,706  |     | 147 | 경상북도 예천군 | 54,954  |     |
| 92  | 충청남도 청양군 | 29,866  |     | 148 | 경상북도 봉화군 | 29,249  |     |
| 93  | 충청남도 홍성군 | 98,437  | 기설치 | 149 | 경상북도 울진군 | 46,280  | 기설치 |
| 94  | 충청남도 예산군 | 78,324  |     | 150 | 경상북도 울릉군 | 9,162   |     |
| 95  | 충청남도 태안군 | 60,517  |     | 151 | 경상남도 통영시 | 119,349 |     |
| 96  | 전라북도 군산시 | 258,664 |     | 152 | 경상남도 사천시 | 108,865 |     |
| 97  | 전라북도 익산시 | 268,143 |     | 153 | 경상남도 밀양시 | 101,253 | 기설치 |
| 98  | 전라북도 정읍시 | 102,851 |     | 154 | 경상남도 거제시 | 232,973 |     |
| 99  | 전라북도 남원시 | 76,082  |     | 155 | 경상남도 의령군 | 25,257  |     |
| 100 | 전라북도 김제시 | 81,025  |     | 156 | 경상남도 함안군 | 59,408  |     |
| 101 | 전라북도 완주군 | 98,878  |     | 157 | 경상남도 창녕군 | 56,487  |     |
| 102 | 전라북도 진안군 | 24,413  |     | 158 | 경상남도 고성군 | 48,660  |     |
| 103 | 전라북도 무주군 | 23,125  |     | 159 | 경상남도 남해군 | 40,303  |     |
| 104 | 전라북도 장수군 | 20,789  |     | 160 | 경상남도 하동군 | 41,154  |     |
| 105 | 전라북도 임실군 | 25,858  |     | 161 | 경상남도 산청군 | 33,514  |     |
| 106 | 전라북도 순창군 | 26,785  |     | 162 | 경상남도 함양군 | 36,503  |     |
| 107 | 전라북도 고창군 | 51,327  |     | 163 | 경상남도 거창군 | 59,867  |     |
| 108 | 전라북도 부안군 | 48,591  |     | 164 | 경상남도 합천군 | 40,756  |     |
| 109 | 전라남도 목포시 | 212,502 |     |     |          |         |     |
| 110 | 전라남도 여수시 | 270,047 |     |     |          |         |     |
| 111 | 전라남도 순천시 | 276,986 | 기설치 |     |          |         |     |
| 112 | 전라남도 나주시 | 116,968 | 기설치 |     |          |         |     |
| 113 | 전라남도 광양시 | 153,164 |     |     |          |         |     |
| 114 | 전라남도 담양군 | 45,031  |     |     |          |         |     |
| 115 | 전라남도 곡성군 | 26,715  |     |     |          |         |     |
| 116 | 전라남도 구례군 | 24,134  |     |     |          |         |     |
| 117 | 전라남도 고흥군 | 60,672  |     |     |          |         |     |
| 118 | 전라남도 보성군 | 37,401  |     |     |          |         |     |
| 119 | 전라남도 화순군 | 60,941  |     |     |          |         |     |
| 120 | 전라남도 장흥군 | 34,633  |     |     |          |         |     |
| 121 | 전라남도 강진군 | 32,478  | 기설치 |     |          |         |     |
| 122 | 전라남도 해남군 | 63,877  | 기설치 |     |          |         |     |
| 123 | 전라남도 영암군 | 51,875  |     |     |          |         |     |
| 124 | 전라남도 무안군 | 90,544  |     |     |          |         |     |
| 125 | 전라남도 함평군 | 30,348  |     |     |          |         |     |
| 126 | 전라남도 영광군 | 51,376  |     |     |          |         |     |
| 127 | 전라남도 장성군 | 42,233  |     |     |          |         |     |
| 128 | 전라남도 완도군 | 46,103  | 기설치 |     |          |         |     |
| 129 | 전라남도 진도군 | 28,717  |     |     |          |         |     |
| 130 | 전라남도 신안군 | 38,222  |     |     |          |         |     |
| 131 | 경상북도 경주시 | 245,669 |     |     |          |         |     |
| 132 | 경상북도 김천시 | 136,202 | 기설치 |     |          |         |     |
| 133 | 경상북도 안동시 | 153,816 |     |     |          |         |     |
| 134 | 경상북도 영주시 | 99,735  |     |     |          |         |     |